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방 법	직 렬(직 류)		직 급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교육행정)	일 반 인	9급	3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장 애 인	9급	2명	(선택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저 소 득 층	9급	1명	
	시설	건 축	9급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일 반 기 계	9급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 반 전 기		9급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	일반기계	9급	1명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 계				43명	

※ 출제범위 등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나)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교육행정(9급)	시설(9급)	공업(9급)	공업(9급)
시험시간	10:00 ~ 11:40 [100분]			10:00 ~ 11:00 [6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제한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㉞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㉞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㉞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 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바” 항 참조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 제공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내용"】 참조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관련학과(기계) 졸업생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① **공업직렬의 임용예정(일반기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6]의 ‘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공업(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②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FFK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③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고졸자**
 - **고졸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15.1.1 현재)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위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8.2.28. 이전 출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15. 5. 11.(월) ~ 5. 15.(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서식 1), 추천서(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으니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바” 항 참조

4. 시험문제 공개여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므로 시험종료후 **시험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위탁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과목수	대상 과목(공개)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위탁출제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기간 [취소기간]	시 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5. 5. 18.(월) ~ 5. 22.(금)	필기시험	2015. 6. 17.(수)	2015. 6. 27.(토)	2015. 7. 24.(금)
[취소기간 : 2015.5.18.(월) ~ 5.29.(금)]	면접시험	2015. 7. 24.(금)	2015. 8. 04.(화)	2015. 8. 10.(월)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gosi.use.go.kr>)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는 접수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접수마감일(5.22.)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취소 기간내에는 취소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취소마감일(5.29.)은 18:00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 **상담시간 : 09:00~18:00 (☎052-210-5723~7)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일은 상담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3.5cm×4.5cm(상반신 컬러증명사진)이며, 용량은 9kbyte 이상 100kbyte 이하,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2015. 6. 17.(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5. 8. 4.)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 원서접수 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30%

- ※ 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직류)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2012.1.1이전 취득 워드 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비율(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 제외)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임용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일반직 9급	변호사	5%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 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6.26.) 18: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gosi.use.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 또는 사전 입력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가산점을 허위로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공고합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바.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사.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표준)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파.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